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9권 제4호(2003) 546-558

사회정의와 복지지리학에 관한 고찰

배 미 애*

A 'Social Justice' in Geography of Welfare

Mi Ae Bae*

요약 : 복지지리학은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사회정의'는 '인간의 욕구'와 더불어 포스트모던이후 복합적 담론에 대항하여 공간의 해석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치기준으로 등장하였다. 복지지리학도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공간정의의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논하였다. 본 논문은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과 정의로운 복지 분배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과 같은 사회정의를 평가하는 다양한 기준들을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 복지의 정의로운 분배평가와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복지의 평등한 분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정의의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점 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사회정의, 사회정의론, 복지지리학, 분배정의, 공간정의, 복지평가기준

Abstract : Social justice has been an interest of whole geographers for almost four decades. The conception of social justice includes fairness and equity in the distribution of a wide range of attribu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social justice in geography of welfare. The theories of social justice are needed to describ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justice and geography of welfare. The evaluation of spatial variations in welfare is closely associated with social justice. Equality, equity, efficiency, and fairness are the reasonable criteria to apply to the evaluation of distributions of welfare, relating to distributive(or territorial) justice. However, there are complications in the spatial application of welfare evaluation criteria, including access across space, boundary crossing and ecological fallacy.

Key words : Geography of welfare, Social justice, Distributive justice, Territorial justice, Welfare evaluation criteria, Theories of social justice

1. 서 론

1970년대 지리학이 계량적 접근과 구조적 접근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의 지리학적 연구들은 유사한 접근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경제, 사회, 정치적 상황에서 사회적 결과는 사회적 투쟁과 인간행위 수행의 결과로서 형성된다고 인식하며, 포스트포디즘 축적체제와 특정 국가의 상황을 급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세계화를 논하고 있다. 또한 언어의 의미와 단어의 사용이 제도를 변화시킨다고 생각하며, 모든 규모의 지리적인 상황이 인간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들은 합리성과 지식의 다원성에서 논거를 찾는 포스트모던적 사고로서 공간을 이해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복합적 담론을 강조하는 포스트모던시기에 가치체계와 접근방법의 다양성과 다원성으로 인해 단 한 가지 준거에 의해 사회를 분석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지리학자들에 의해서 인간의 기본욕구와 사회정의는 다양한 담론을 모두 포용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Harvey(1992a)는 사회정의의 보편적 개념이 복합적인 담론으로 인하여 위태롭게 된다고 하면서 사회정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다원적인 가치체계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의 공간성은 모든 담론들에 내재하고 있다. 즉 복지의 공간적인 접근과 복지향상의 노력이 보편적인 사회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Smith, 1992) 다른 어떤 기본적인 개념보다도 사

* 부산대학교 부산지리연구소 전임연구원(Full-time researcher, Institute of Busan Geography, Pusan National University)(mabae@pusan.ac.kr)

회정의는 공간적 관점에서 복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지리학에서 사회정의의 주제는 오랜 기간동안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법칙추구적 방법론의 기계적인 해석이 실제 인간행위와 모순 되고 사회문제와 불의를 인식하지 못하는 비인간적인 것으로 간주되면서 지리학에서 사회정의의 주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거론되어져 왔다. 1970년대에 들어 급진주의지리학이 빈곤, 기아, 범죄, 인종차별, 공공서비스에의 접근 등 과거 등한시되었던 주제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복지에 관심을 가진 지리학자들도 이러한 주제들이 사회의 불공정성에 의해 야기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법, 사회정책, 경제조직 등과 관련하여 정의와 불의를 토론하였다. 또한 사회정의론을 바탕으로 복지개념을 재정립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 노력하였으며 영토적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고려하였다. 영토적 정의에서 복지의 공간적 불균형은 공간적 불의로 인식되었으며 Harvey (1973)에 의해 최초로 해석이 이루어졌다. 숨겨진 메커니즘에서 비롯된 분배불평등을 Harvey는 공간체계와 관련하여 사회정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구조적 접근이 지배적인 연구방법이 되면서 분배문제는 다소 소외되었고 지리학에서 사회정의의 직접적인 고려는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일부 지리학자들은 후기구조주의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방편으로 도덕성을 고려한 사회정의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도하였다. 즉 가치창조나 도덕적 판단은 인간 삶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도덕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므로 지리학에서 이를 배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정의의 분배적 측면도 도덕의 보편적 원리 및 법칙을 추구하는 도덕철학과 함께 다루어졌고, 이는 '양질의 삶(good life)'을 추구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본 논문은 복지지리학적 측면에서 공간적 불평등과 사회정의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정의의 다양한 이론들을 통하여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복지의 공간적 불평등이 갖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우선 사회정의의 개념 및 다양한 사회정의론을 고찰하였으며 지리학에서의 사회정의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회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들의 개념적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기준들을 복지 공간의 평가에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평가기준들을 복지공간에 적용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사회정의의 개념은 실제적으로 복지지리학에 한정된 개념은 아니며, 공간적 정의와 관련하여 모든 지리학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다. 이 논문을 통하여 복지지리학에서의 사회정의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복지지리학이 추구하는 복지 분배의 공간적 평등이 사회정의를 논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2. 사회정의와 분배정의

1) 사회정의의 개념과 사회정의론

Barry(1989)는 사회정의를 광의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개인의 물질적 상황에 따라 만족될 수 있는 소득과 자원의 분배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서 설명하였다. 따라서 그에 의하며 "사회정의의 이론은 방어될 수 있는 사회적 분배에 관한 이론"이다. Rawls(1971)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사회정의의 원칙은 기본적인 사회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공동체의 이익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한다고 하였다. 또한 Harvey도 사회적으로는 정의롭다는 의미는 정의로운 분배에 도달하게끔 고안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소득과 자원의 적절한 또는 바람직한 분배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사회정의는 다양한 이론적 내용에 의하여 설명되어져 왔다. 자유론적 정의론, 공리주의 정의론, 계약론적 정의론, 마르크스주의 정의론, 공동체주의 정의론 등을 통하여 사회정의의 보다 구체적인 해석과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다양한 분배방법을 살펴볼 수 있다.

자유론(libertarianism)적 정의론에서는 사회정의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자유시장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신념에 기초하며(Wenz, 1988), 분배의 결과는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과 불균형(inequality

and unequal)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간 개개인의 물질적인 상황에 따라 불평등해질 수 있는 소득과 기타 자원의 분배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개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평등한 권리를 주어지는 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며 일부 특별한 서비스에 대해서 욕구의 불평등한 상황은 정당화될 수 있다. 자유론에서는 사람들의 재산소유가 정당하게 이루어진다던가(자유론에서는 이러한 축적을 '정당한 축적clean accumulation'이라고 한다), 재산을 정당하게 부를 획득하는 데 사용한다면 분배결과가 비록 불평등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분배의 결과는 바로 정당화될 수 있는 불평등과 불균형을 의미한다. Nozick(1974)은 분배의 불평등이 정당한 수단에 의한 정당한 우선권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정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유론적 논리에 따르면 평등한 분배 패턴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유시장에 의한 불평등한 분배는 정당하다.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평등성의 도덕적 원칙을 반영하여 공평을 실현하려는 사고이다. 따라서 공리주의는 형식이나 기대되는 효과에 있어서 강한 평등주의의 성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공리주의는 개인생계비나 활용 가능한 자원 등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집합적 행복을 달성하거나 조성하려 한다. Bentham과 Mill은 도덕적 효용을 최대복지(행복, 선호만족, 또는 명예)의 원칙에 두고 '도덕적 평가의 유일한 기본적인 근거는 바로 인간복지의 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도덕적인 관점은 사회정의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간주했다. 고전적 공리주의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기쁨, 즉 고통의 부재를 의미했으나(Smith, 1992) 신고전경제학과 복지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적 선호와 효용성을 통한 만족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사람들은 일반적 경제구조 속에서 제한된 자원으로부터 가능한 한 많은 효용성, 즉 만족을 얻으려고 하며 이러한 개인적 효용성의 총체가 복지이며 이것이 사회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공리주의 정의론에서는 인간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이 권리는 결코 절대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선(common goods)'의 범주 안에서만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공리주의 정의론의 이러한 특징을 Wenz(1989)는 자유주의적 정의론에 비해 보다 합리적이고 유연하며 포괄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Rawls(1971)은 공리주의 정의론에서 강조되는 공동선 개념은 공동체적 호혜성을 강조하는 정의론과는 무관하거나 대립적이며, 때로 전체주의적 이념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였다.

계약론(contractarianism)적 정의론은 사회정의에 대한 또 다른 관점으로서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John Rawls(1971)의 연구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의에 관한 Rawls의 이론은 매우 영향력이 크며 최근 사회정의론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국가의 법이나 공동체의 규범을 준수하는 의무는 피통치자들의 계약이나 합의에 기초한다는 루소의 정치이론에 영향 받은 공정성과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Rawls의 접근방법[1]은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약속한 사회적인 계약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설명한다. Rawls(J. Rawls, 1985)는 개인이 특정한 상황에서 약속한 사회계약을 '최초의 상황(initial situation)'으로 인식하고 사회계약을 바탕으로 사회정의를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 혹은 자연상태(state of nature)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각자의 사회적 위치와 관계없이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에 덮인 채 제도에 동의하게 된다. 계약론적 정의론에서는 만약 사회가 불평등하게 된다면 이러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 있어 평등을 요구해야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예를 들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은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혜택이 주어지는 한 분배가 정당화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그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회적 제 가치들의 분배에 있어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이익을 취할 수 없으며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손해를 그대로 묵과할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을 제시한다. 그리고 만약 사회체제에 어떤 불평등이 있음으로써 그것이 단순한 평등이 주는 수준과 비교해서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보다 개선해 줄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불평등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다. Rawls는 공동선에의 기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원칙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기여는 전적

으로 빈곤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마르크스(Marxism) 사회정의론에서 사회정의는 공동체적 생산관계를 통해 노동에의 참여능력과 노동을 통해 생산된 산물의 욕구에 따른 분배를 의미한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사회에서 노동생산물의 분배를 관리하기 위한 정의의 원칙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그가 제시한 '능력에 따라 각자로부터, 필요에 따라 각자에게로'라는 슬로건은 정의에 관한 그의 입장을 극단적으로 나타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 제시한 정의론들과는 달리 마르크스주의 정의론은 분배적 정의가 아닌 '생산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생산적 정의는 인간과 자연 간의 노동과정에 공동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자신과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의 욕구충족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소외되지 않은 노동 그 자체를 통하여 자아실현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 정의론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서 인간본성에 더 큰 비중을 둠으로써 인간중심적이며(Eckersley, 1992), 생산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의 무제한성을 전제로 하는 기술 중심적(Jung, 1983)이라고 비판받기도 하였다. 또한 인간과 자연과 관계뿐만 아니라 자연을 매개로 한 인간들 간의 관계에서 물질적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상징적 측면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최병두, 1998).

공동체주의(communitarianism) 입장에서 Young (1990)은 도덕철학의 관점에서 사회정의를 논하였다. Young는 단순한 분배결과보다는 사회의 다양한 단체의 지배 및 압력과 관계가 있는 불의의 측면에서 도덕성과 관련하여 사회정의를 설명하였다. Young에 따르면 분배의 패러다임은 각 개인의 소유를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유는 사람들의 사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개인의 소유와 노동은 그들을 구성하는 공적 제도와 일상의 관습에 의해 제한된다. 복종과 추출은 때때로 문화적인 제국주의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현실화된다. 민주주의는 사회정의의 핵심이나 1인 1표로서 인식되는 공식적인 정치적 권리는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는 불충분하다. 이와 관련하여 Young은 기능적인 계약 대신에 지리적, 민족적, 성적, 직업적 차이성을 지닌 사람들의 독특한 목소리를 뒷받침하는 제도 내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자신들의 견해를 주장할 수 있는 실제적인 참여적 구조의 사회적 실체를 강조하였다.

사회정의론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범주는 물질적 자원 및 사회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분배정의이다. 자유론적 정의론과 마르크스주의 정의론의 많은 논쟁과 논의는 기본적으로 분배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계약론적 정의론 중 Rawls의 정의론은 분배정의에 관한 이론들 가운데 가장 세련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정의론들은 사회정의를 개인들 간의 의무관계 및 사회적 균형과 조화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며 또한 분배적 측면에서 사회정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공통성을 가진다. 지리적인 연구가 위에서 제시한 공리주의 등 다양한 포괄적 이론에 의해 얼마만큼 영향 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매우 추상적인 개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회정의론들이 복지의 공간적 분배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임은 분명하다.

2) 분배정의와 사회정의

사회정의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분배정의는 자원들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에 요구되는 욕구의 형평적인 충족에 초점을 둔다. 즉 인간들 간의 관계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이나 가치들에 의해 매개되며 이 관계에 있어 정의는 이러한 자원이나 가치들에 관한 욕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충족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분배문제를 사회정의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분배정의는 Harvey에 의하여 욕구, 공동선에의 기여, 혜택의 3가지 범주로 구체화된다.[2] 사회적으로 정의롭다는 의미는 정의로운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가의 발달단계와 분배방법 등 조직적인 구조의 한계로 인해 공간불균형이 극복되기는 어려우나 분배정의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소득분배는 각 생활영역에 사는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자원은 생활영역간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배분되어야 하며 특별자원은 자연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에서 파생되는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게 배분되어야 한다.

Harvey(1972)가 언급한 것처럼 분배정의는 정치

구조나 집합적 의사결정체계에 따라 문제점을 가진다. 자본주의는 분배의 정당한 수행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의 시장메커니즘을 허용하고, 사회주의는 그들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이나 또 다른 양심적인 사람들을 조정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자본주의에서는 소비자기호의 변화로 인한 자동적인 시장가격형성과 자기제어능력으로[3] 생산은 파레토기준에 의해 분배됨으로써 시장체계는 사회의 부를 정당하게 분배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지지를 받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시장경쟁으로부터 복지를 극대화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과 지역의 분포가 처음부터 불평등하고 토지소유자나 고용주가 이익을 위해 불완전한 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과 불형평성은 더욱 심해지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의 분배결과는 정당화되기 힘들다. 이와 같은 불평등한 시장경제의 결과는 진보적인 세제나 복지 혹은 기타분야의 재분배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재된다. 그러나 실질소득이나 부의 재분배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얼마만큼 이루어지며, 실제로 이미 행해진 재분배가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 있다.

사회주의나 복지국가적 성격과 혼합경제를 가진 사회민주주의체제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보이지만 이 체제 속에서도 정당한 분배, 즉 분배정의의 해답을 찾기란 사실상 힘들다. 사회주의에서는 생산양식을 집합적으로 소유함으로써 노동이 제공하는 잉여생산물에 대한 소유가 제한된다. 따라서 욕구보다는 선택에 기초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자원의 분배와 재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는 사회주의에서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 사회주의에서 사람들이 강하게 열망하는 자유나 일부 소비재의 공급이 기본적으로 부족하고, 분배문제는 혁명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에 이와 같은 제도는 모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욱 열악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Mishra, 1975). 사회민주주의 제도 속에서도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아직까지 지배적이고 부나 토지, 기타 자원의 소유는 일부 집단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력과 지배력을 가진 소수의 엘리트에게 조절의 능력이 부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재분배는 취약한 집단이나 욕구집단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고, 분배정의는 사회경제적 우선권을 가지고 경쟁하는 권력게임의 윤리 속에서 정도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배적 정의를 강조하는 패러다임은 여러 가지 측면들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로 '차이의 정의'를 강조하는 Young(1990)은 분배정의 패러다임이 분배유형을 결정하는 사회구조적, 제도적 배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분배의 개념은 비물질적 사회적 재화들이 마치 정적인 사물들인 것처럼 간주하고 사회관계 또는 사회과정에 있어 이들의 기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Smith(1992)도 정치사회적 변화는 사회정의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영토적 차원의 분배문제와 빈곤지역이나 박탈지역에 대한 재분배(redistribution)[4]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만든다고 강조하면서, 분배정의를 실현시키려는 기존의 여러 가지 체제에도 불구하고 분배정의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제도는 권력이 분배를 필요로 하는 집단을 제대로 결정하는 가에 따라서 추구된다고 보았다.

3) 복지의 창출과 사회정의

공간정의는 지역단위에 사회정의의 개념을 적용시킨 것으로써 지역에 기초한 정책의 적용원리가 된다. 공간정의에서는 사회의 부와 사회복지의 분포 및 도출상태가 기본적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정의의 다양한 견해들이 수렴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간정의도 한 사회의 부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수단 및 부의 지역간 최종 분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정의에서 부의 분배는 특정한 사회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인간들의 욕구는 공간정의를 결정하는 1차적 변수이며 공동선에 대한 기여와 메리트재[5]에 의하여 보충되어 진다. Pepper(1990)는 사회정의의 일차적 원리에서 권리를 기본 욕구, 최저 수준의 뜻으로 사용하였으나 기본욕구를 최소 수준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사회복지는 욕구가 충족되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공간적 의미에서의 복지창

출은 이에 상응하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욕구충족과 인간복지의 관계에서 Doyal과 Gough (1991) 지속적, 효과적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신체적 건강에 대한 욕구와 삶을 영위하는 개인적 선택능력, 즉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욕구를 기본욕구로서 표현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욕구는 음식, 의복, 은신처, 건강, 교육, 안전, 사회 및 자연환경으로 표현되는 중재욕구로서 충족된다고 하였다. Drewnowski(Smith, 1977)도 인간복지와 생활수준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복지를 인간의 신체적 지위(육체적 성장), 교육적 지위(정신적 성장), 사회적 지위(사회참여와 통합)의 측면에서 정의하였는데 이는 Doyal과 Gough의 기본욕구의 개념과 유사하다. 그에 따르면 생활수준은 중재욕구에 따라 결정되고 복지상태는 생활수준에 의해 영향 받는다.

인간욕구에 대한 Doyal과 Gough(1991)의 접근은 생산, 교환, 소비, 사회체계, 사회제도, 문화적 관습 등을 포함하는 사회구조에 초점을 둔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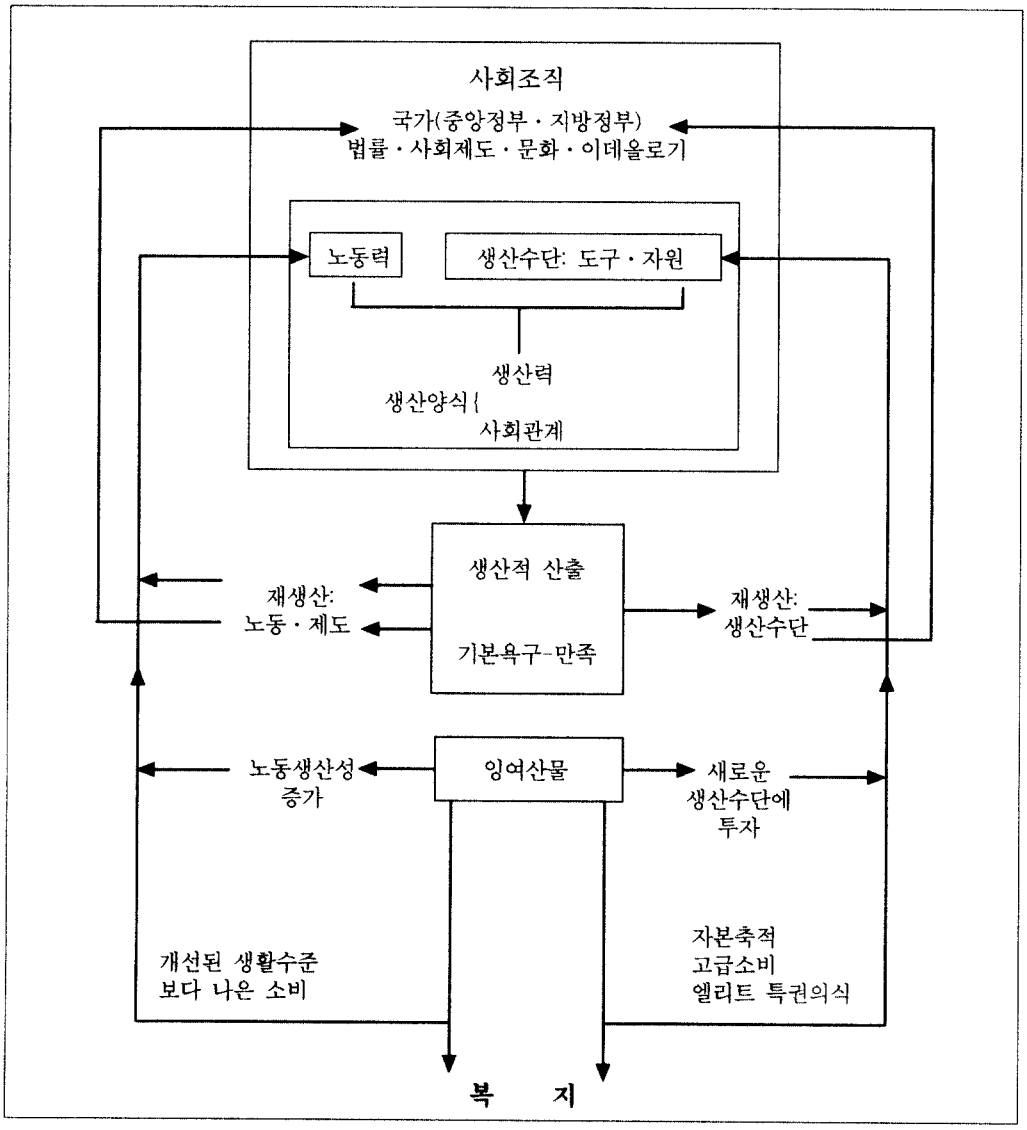

그림 1. 복지의 창출

자료: Smith, D., 1994, 137

구조와 제도는 사회정의의 설명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며 욕구가 실제적으로 만족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한 재분배적 전략을 토의하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은 시공간적으로 불균형한 인간복지에 공헌한다. <그림 1>은 사회전개과정을 통하여 사회구조가 복지에 공헌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력과 생산수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물질적 생산과정인 생산양식은 생산력의 수준과 사회적 관계에 의해 특징 지워진다. 생산적 산출은 생산수단과 노동력 및 제도의 재생산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에서 진행 중인 재생산에 대한 기능적 필요성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욕구' 만족을 의미한다. 현재의 생활수준 혹은 복지수준에서 사회의 단순한 재생산의 욕구를 넘어선 잉여생산은 노동생산성의 강화나 새로운 생산수단에 대한 투자로서 전개된다. 그리고 복지 혹은 생활수준의 향상은 생산양식과 잉여분배의 정도에 전적으로 영향 받는다. 그러므로 개인의 기본욕구도 이러한 과정에 의해 영향 받고, 최종적인 복지상태도 이러한 과정의 결과로서 나타날 것이다.

욕구충족과 복지의 향상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특정장소에 적용됨으로써 불균등한 패턴을 가지게 된다. 이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욕구만족의 실제수준과 소득과 부의 공간적인 불평등(Sterba, 1986)과 관계를 가진다. 지리적으로 불균등한 자원혜택과 기술적 능력은 사회적 생산관계 및 정치적 과정,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불균형을 조장하는 사회구성체와 관계가 있다. 일부 집단의 지배와 억압은 이와 같은 구조적인 불균형에 의해 더욱 고무되어 진다. 따라서 특정 공간단위를 대상으로 욕구변수를 측정하는 문제는 생태학적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며, 이런 경우 공간정의의 획득을 위한 정책이 다른 형태의 불의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간적 또는 지역적 재분배 단위를 기준으로 사회정의에 기초한 정책은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사회정의는 기본적으로 권력의 소유, 통제 및 재분배를 결정하는 계급구조에 근거한 정책에 의해 영향 받게 된다.

3. 복지공간에서의 사회정의의 평가와 한계점

1) 복지공간의 사회정의 평가

복지의 정당한 분배에 관한 공간적 평가는 사회정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Smith, 1977). 평가는 복지의 공간적 분배정의를 판단하고 이러한 패턴을 유발하는 사회구조를 진단하는 것이다. 복지의 분배가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지, 즉 복지의 분배정의가 실현되는지의 판단은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복지공간에서 사회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평등, 효율성, 형평성, 절차상 공정성, 기대, 상벌가치, 권리, 욕구 등이다(Smith, 1977). 사회정의의 평가에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은 평등(equality)이다. 분배평가의 기준으로서 평등은 복지자원분포에 관한 영토적 평등으로 간주된다. 평등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혜택과 처벌의 의미에서 산술적 평등과 서로 다른 양이 정당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비례적 평등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 어려움을 가진다.[6] 산술적 평등은 '민주적'이상으로 인식되고 정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소유함으로써 실현된다. 비례적 평등은 상벌의 비율에 따른 평등을 의미하고 다음의 함축적인 설명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만약 한사람은 많이 요구하고 다른 사람은 적게 요구하면 정의는 서로 다른 배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이 경우 둘 다 보답의 비율은 같다고 느낄 것이다'(Haworth, 1968). 따라서 비례적 평등은 실제적 평등을 의미하며 총체적 결과의 평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절차적 공정성이나 형식적 평등을 거부한다.

복지공간에서 분배정의의 또 다른 평가기준은 효율성(efficiency)이다. 효율성은 주어진 자원으로부터 산출을 극대화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실질소득의 효율적 분배에 관한 경제적 관점은 복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제적 인센티브는 생산에 참여한 개인이나 지역에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서 더욱 생산적인 사람이나 지역은 더 많은 실질소득을 받음으로써 보상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복지수준은 낮은 생산성지역보다 높은 생산성지역에서 더 높을 수 있다. 효율성에 의한 이익의 불평등으로 인해 효율성과 평등은 종종 대립하며 실제 평등보다는 효율성이 분배에 관한 정의를 제시할

수도 있다.

사회의 이익과 처벌의 분배에 있어 공정성을 의미하는 형평성(equity)은 소득이나 인간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기회의 분배평가에 적용된다. 형평성은 평등주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나 완벽한 평등으로는 해석되지 않는다. 형평성의 논리에서는 불평등 분배가 형평적일 수도 또한 정당할 수도 있다. 즉 사회서비스는 욕구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욕구수준에 따라 불평등하게 처리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분배정의의 평가에서는 평등에서 벗어난 정도가 욕구에 비례할 때 지역간 분배의 형평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형평성에 근거한 분배정의는 질적인 평등이나 제한된 불평등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Scitovsky(1964)는 이와 관련하여 형평에 의하여 사람들이 만약 평등하지 않다면 최소한 그들을 만족시키는 데 근접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함을 주장했다. 사회정의에 관한 '제한된 불평등 원리'는 Rawls(1971)에 의해서 이루어졌다.[7] Rawls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정당화되는 상황을 이해하려 하였다. Rawls는 개인이 이익 추구와 같은 광의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고, 만약 사회경제적인 불평등이 만들어진다면 사회는 더 나은 이익을 창출하는 계층의 불평등성에 의해서 개선되어 질 수 있다고 하였다.

복지공간의 사회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으로서 절차상 공정성(procedural fairness)은 절차와 관련한 규칙의 정확한 적용을 의미한다. 절차상 공정성은 모든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고 시공간적으로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을 요구한다(Hay, 1995). 분배정의는 합리적인 기대의 완성으로서 간주되고 사람들은 이러한 기대(expectations) 속에서 결정하고 행동하며 기대에 관계된 규칙이나 상황이 부정하거나 불공정하면 변화를 요구한다(Campbell, 1973). 따라서 모든 개인의 기대가 거부되거나 어떠한 개인도 기대를 완성시킬 수 없다면 부정당하게 판단되는 것이다(Hay, 1995). 이 외에 상벌가치(desert)는 보상이나 처벌의 정의로운 분배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되며 권리(rights)[8]는 개인이 자격을 부여받는 곳에서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욕구(need)도 분배정의를 평가하는 원칙으로 사용되지만 종종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최후의 상황이 공정하거나 평등한 입장에서 정당화되며 욕구인식이 다양하다는 측면에서 다소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Bradshaw, 1972). 지금까지 제시한 평가기준 이외에 Hay(1995)는 오직 하나의 기준으로서 사회정의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통합된 개념이 요구된다고 강조하면서 분배평가의 기준으로 대표성을 가진 형평성과 공정성, 그리고 정의를 상호연관성을 지닌 하나의 집합적인 의미로 통합한 EFJ(Equity, Fairness, Justice)를 복지 분배의 가장 합리적인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2) 평가기준과 지리적 연관성

평가는 적절한 기준을 바탕으로 복지의 공간적 패턴이 사회정의에 얼마나 부합되는가를 판단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정당한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는가는 우세한 사회적인 가치의 측면에서 평가된다. 따라서 공간적으로 사회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과연 어떻게 지리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복지의 정당한 분배를 평가하는 기준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지리적이거나 또는 지리적이지 않다(Smith, 1997). 평가기준이 지리적이라는 입장은 특별한 정의 혹은 불의의 형태로 혜택을 받거나 고통을 당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지리적인 위치를 가진 거주자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이지 않다는 견해는 평가기준 각각이 어떤 지리적 공간이나 지역간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는 상상의 세계에서 정의되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평가기준들이 지리적이어도 지역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 지역의 정의나 불의를 평가하기 힘들다. 개인의 소득불균형이 아주 심해도 일정지역규모에서 적용되는 소득의 범주가 동일하다면 불평등에 대한 어떠한 공간적 증거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즉 평가기준들이 이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공간적 획일성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평가기준들이 다음의 의미에서 직접적으로 공간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형식적 평등의 지리적인 적용은 법률이 지리적

인 상황에서 개인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계획관련 법안이 계획이 요구되는 행정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합법적으로 대상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제외된다면 형식적 평등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다. 반면 실질적인 평등은 지리적인 상황에서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총소득이나 혜택의 차별적인 분포는 실질적인 불평등을 의미하고 지역규모와 관계없이 정책이나 절차를 통하여 최소화되어야 한다.

절차적 공정성은 지리공간상에서 제한되어 적용된다. 예를 들어 규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만약 결정권을 가진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대항하거나 또는 편견을 허락한다면 이는 명백하게 절차적 공정성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 큰 규모의 행정구역은 공간적 자치권에 따라 분할되고 각각의 자치권은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등한 법률이라도 자치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되기도 한다. 즉 모든 규칙은 동등하지만 서로 다른 지리적인 상황에서는 일관성이 없다.

합리적인 기대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지리적인 상황에 적용되는데 만약 특정지역의 법률이 제멋대로 변한다면 기대도 항상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벌가치와 권리는 개인의 장단점과 관계가 있고 지리적인 지역이 특별하게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리적인 적용에 다소 문제가 있다. 또한 욕구도 지리적인 연관성을 가지나 욕구의 정도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불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일부 평가기준들의 공간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토론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

3) 평가의 공간적 한계

공간정의는 욕구,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의 개념을 합친 것으로 이해되며 Davies(1968)는 공간정의를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인구 간에 가장 적절한 분배는 욕구에 따라 공급하는 것이고 지역간의 가장 적절한 분배는 그 지역의 인구의 욕구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자원의 분배가 어떤 특별한 욕구에 만족되도록 이루어진다거나 늘어나는 욕구에 비례하여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지면 공간정의는 실현되는 것이다(Pinch, 1985).

그러나 공간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평가기준의 지리공간상 적용에의 몇몇 한계점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가진다. 첫째는 공간에 대한 접근의 문제로서 공간적으로 분산된 지역에서 접근비용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절차에 동등하게 접근한다는 절차상 공정성을 위반하는 일이 될 것이고 형식적 평등이나 욕구해결도 이동이나 접근의 불균형, 또는 시설에의 접근문제로 방해받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이동시간이나 이동비용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불공정성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9]

둘째는 지역연구에 있어서 Rawls의 '제한된 불평등'의 적용은 공간적으로 이동성이 적은 정적인 사회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이는 만약 사람들이 가난한 지역에서 부자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 그들의 몫은 개선될 것이고 이동을 고무시키는 전략은 가난한 지역을 도우는 데 선호될 것이다. 최소한의 이점을 가진 지역의 상태를 만드는 데 우선권을 두는 것은 가능한 한 개인이동을 줄임으로써 타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동을 제약하는 또 다른 이유는 부자지역의 인구집중은 그 지역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따라서 일반적 복지를 더 낮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제한된 불평등 기준은 공간분배를 판단하는 문제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만약 최소한의 기준이 설정되고 적절한 공간지표가 발달되었을 때도 요구되는 수준이 각각의 지역에 따라 어떻게 규명되는 가의 문제가 남아있을 것이다.

셋째는 서비스제공이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욕구충족의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도 지리적인 단위의 통계는 종종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경계구분이 주요 요인이 되고 실제적 불평등보다 가시적인 불평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서비스공급단위의 규모는 크고 통계단위의 규모가 작을 때 공간적 불평등은 최상이 된다.

넷째는 생태적인 문제와 연관하여 종종 욕구집단과 제공 서비스간의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고급의료수

준이 제공된다고 평등과 더불어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료분야가 노인인구에 적절하고 적합하다는 어떤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형식적 평등, 실질적 평등, 욕구의 충족으로 간주되어도 모든 것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불분명하며 보다 정확한 적용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패턴이 다양한 평가기준에 의한 사회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인간복지에 얼마나 기여하는가의 측면에서 평가되어야 하나 사실상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진보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평가영역은 계속 연구되어야 한다(Smith, 1997).

4. 결 론

사회의 빈부격차와 국가의 발전격차는 지금까지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유한 사람들이 그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논하기 전에 국가와 사회가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하며 이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제적, 제도적 차이는 개인의 자유, 사회질서, 사회안녕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으로서의 사회정의는 도덕성만큼이나 중요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리학이 단지 사회정의의 맥락 속에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간, 입지, 거리 등의 개념과 통합된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사회정의를 이해해야 한다.

복지지리학적 측면에서 복지공간의 평가를 사회정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정의는 자유론, 공리주의, 계약론, 마르크스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지만, 사회정의론은 궁극적으로는 사회정의가 물질적 자원 및 사회적 가치의 배분과 관련된 분배정의라는 점에 합의한다. 그리고 사회정의는 복지의 공간적 분배를 설명하는 논리적 근거임이 분명하다.

둘째 사회정의론에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분배정의는 인간의 생존과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욕구충족의 형평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다. 공간정의는 지역단위에 사회정의의 개념을 적용시킨 것으로써 한 사회의 부가 생산되고 분배되는 수단 및 부의 지역간 최종 분배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간정의에서 부의 분배는 특정한 사회관계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셋째 복지의 바람직한 분배에 관한 공간적 평가는 사회정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복지평가는 복지의 공간적 분배정의를 판단하고 이러한 패턴을 유발하는 사회구조를 진단하는 것이다. 복지의 공간적 분배가 사회정의에 부합되는 지는 평등, 효율성, 형평성, 공정성, 기대, 상벌가치, 권리, 욕구의 기준과 통합된 평기기준인 EFJ(Equity, Fairness, Justice)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정당한 분배를 평가하는 기준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지리적이거나 또는 지리적이지 않다는 측면과 평가기준의 지리공간적용이 일부 한계점을 지닌다는 점이 본 연구와 관련하여 다시 토론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리학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관심을 설명하는 측면에서 사회정의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전보다 어떤 주제를 설명하는 더 큰 능력을 제공받는 것이다. 복지지리학도 마찬가지로 복지 분배의 문제에 있어 사회정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복지지리학자들은 이미 많은 연구와 토론에서 불평등과 불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리학과 사회정의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더욱이 분배정의의 공간성은 복지지리학이 연구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이다. 공간적으로 평등한 복지의 분배는 복지지리학이 추구하는 이상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복지공간의 평가는 분배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판단하여 복지정책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서 제공될 것이다. 사회정의의 고려와 함께 더 나은 세계를 창출하기 위한 지리학자들의 공헌은 계속 이어질 것이고, 복지지리학의 측면에서는 더 나은 복지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도 개선될 것이다.

註

1) Rawls의 정의론은 자유와 평등, 효용과 권리의 사고들을 결합시키고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을 위

한 새로운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자체의 논리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원초적 입장'을 가설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개인들은 결과가 자신의 이해관계와 어떻게 관련될 것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들에 합의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정의의 원칙들에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Rawls는 고전적 공리주의적 정의론을 비판하지만 그 역시 공리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비판된다. 또한 Rawls가 제시한 원칙들은 자유방임적인 고전적 자유주의의 재현이 아니라 평등주의적 복지이론과 양립 가능한 자유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넓은 의미로 이 원칙들에 반영되어 있는 도덕적, 정치적 이념은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2) 욕구(need)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식량, 주택,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와 공간서비스, 소비재, 레크레이션, 교통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범주들로 구성된다. 공동선에의 기여(contribution to common goods)는 자원분배의 공간조직과 패턴을 의미하고 일차적으로 욕구충족의 형태로 부여되는 혜택, 그리고 이차적으로 파급효과와 승수효과 등을 통해 다른 영역에서 집합적 결과로서 제공된다. 만약 어떤 지역에 대한 자본분배가 다른 지역을 고무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면 이 지역은 공동선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혜택(benefit)은 어려운 사회 환경이나 자연환경을 보상하기 위한 분배를 의미한다. 특별자원은 낡은 환경과 하부구조를 가진 지역에 배분된다. 따라서 혜택은 지역정책의 일부가 되어야 하고 정당한 분배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혜택이 제공되는 영역은 가능한 한 커야한다.

3) 완전한 경쟁 하에서 모든 가격은 한계비용에서 동등하게 되고 모든 요인가격(factor prices)은 한계생산비나 총비용이 최소화하는 지점에서 가치가 동등하게 된다. 여기에서 개인의 복지나 희망은 한계효용으로 나타난다.(Samuelson, 1973)

4) 재분배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한 집단 또는 장소에서 다른 집단 또는 장소로 이전시키는 체계를 뜻한다. 재분배는 복지지리학의 일반적 관심 중 하나로서 사회정의와 공간체계간의 관련에 관한 Harvey의 예비적이며 '자유주의적' 정형화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Harvey, 1973). 구심적 또는 원심적 흐름을 가진 재분배는 호혜성과는 현저하게 다르다. Wheatley(1971)는 "호혜성에서 재분배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은 도시화의 등장에 주요하며, 이들은 소수의 사람이나 장소에 잉여생산물을 집적시키는 데 유효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arvey(1973)는 그의 주요 주제인 사회정의로 되돌아와서, 호혜성과 재분배를 '현대 거대도시에서 시장교환을 상쇄시키는 힘'으로 간주하였다.

5) 특정한 순수 공공재의 한 형태로 국가적 공급수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한 영토내의 모든 국민들은 예를 들어 적어도 일정한 수준의 깨끗한 식수나 치안서비스를 공급받아야 하고 공공정책은 영토의 모든 지역에서 일정수준을 유지하며 공급될 수 있도록 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공공재가 공급된다면 이는 불균등한 공공재의 공급이 된다.

6) 지역분포패턴을 평가하기 산술적 평등의 측정방법은 Sj= S for all j(.....*n*)이고 S는 모든 지역의 평균수준이고 위식은 완벽한 평등수준을 의미한고 만약 Si가 j지역의 복지수준이라면 등간 혹은 등비 지표에 의해서 측정된다. 비례적 평등의 측정방법은 Sj= kD for all j이고 여기서 D는 보상(desert)의 측면이고 k는 상수이다. 만약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원하는 수준(S 혹은 kD)이 S*로 표기된다면 S와 S*의 차이는 불평등의 정도를 의미한다. 산술적 평등은 형식적인 평등(formal equality) 혹은 경제학에서의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또한 Sen의 보편화(Universalizations)의 원리와 유사하다. 비례적 평등은 적극적 차별정책에 대해 명백한 정당성을 제공하나 방어하기에 가장 어려운 형식이다. 비례적 평등은 Sen의 비인격성(impersonality)의 원리와 유사하다.

7) Rawls의 제한된 불평등 접근(constrained inequality approach or maximin)은 공간체계에서의 정당한 분포에 대한 상술을 구성하는 Harvey의 시도에서 도식화되었다. Rawls의 원리에 따라 Harvey(1972, 1973)는 "지리적인 문제는 최소한 희망적인 지역의 전망을 최대화하는 공간조직의 형태를 설계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어떻게 이것이 성취되는가 하는 것은 정치적 과정의 속성과 관계되어지고 총체적인 결정은 지역간 자원재분배로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 지역의 거주자의 힘(power)은 이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어떤 정부의 형태가 가장 빈곤한 지역의 전망을 가능한 한 최대화할 수 있게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

8) 권리는 개인자유에 대한 침해가 없는 상태의 자유권리(liberty rights)와 건강이나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확신을 가진 청구권리(claim rights)로 나뉘어 진다.

9) 그러나 시설에서 먼 거리에 거주하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하기 때문에 접근에 대한 평등이 정의를 나타내는 모든 증거는 아니라고 Le Grand(1991)는 설명하고 있다.

文 獻

최병두, 1998, 생태학과 환경정의, 대한지리학회지, 33(4), 499-523.

J. 롤스(황경식 역), 1985, 사회정의론, 서광사, 서울.

Arneson, R., 1989, Equality and equal opportunity for welfare, *Philosophical Studies*, 56, 77-93.

Badcock, B. T., 1984, *Unfairly Structured City*, Basil Blackwell, Oxford.

Bair, A. C., 1987, The need for more than justice, *Canadian Journal of Philosophy*, 13, 41-56.

Baker, J., 1987, *Arguing for Equality*, Verso, London.

Barry, B., 1989, *Theories of Justice*, Harvester-Wheatsheaf, London.

Bennet, R. J., 1989, Whither models and geography in post welfarist world? in W. MacMillan(ed), *Remodelling Geography*, Basil Blackwell, Oxford, 273-290.

Boyne, G. and Powell, M., 1991, Territorial justice: a review of theory and evidence,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10, 263-281.

Brown, A, 1986., *Modern Political Philosophy: Theories of the Just Society*, Penguin Books, Harmondsworth.

Campbell, T., 1988, *Justice*, Macmillan, Basingstoke.

Clark, G. L., 1985, Making moral landscapes: John Rawl's original position, *Political Geography Quarterly*, 5(4), 147-162.

Cohen, J. 1986., Review of spheres of justice, *Journal of Philosophy*, 83, 457-468.

Doyal, L. and Gough, I., 1991, *A Theory of Human Need*, Macmillan, London.

Driver, F. 1988., Moral Geographies: social science and the urban environment in mid-nineteenth century England,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13, 275-287.

Eckersley, R., 1992, *Environmentalism and Political Theory:* Toward an Ecocentric Approach, Macmillan, London.

Davies, B., 1968, *Social Need and Resources in Local Services*, Michael Joseph, London.

Dworkin, R., 1981, What is equality? part I: Equality of welfare; Part II: Equality of resource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0, 185-246.

Ginsberg, M., 1965, *On Social Justice*, Penguin, Harmondsworth.

Graham, G., 1990, *Living the Good Life: An Introduction to Moral Philosophy*, Paragon House, New York.

Griffin, J., 1986, *Well-being: It's Meaning, Measurement and Moral Importance*, Clarendon Press, Oxford.

Harvey, D., 1972, Social justice in spatial system, *Antipode*, 1, 87-106.

Harvey, D., 1973, *Social Justice and the City*, Edward Arnold, London.

Harvey, D., 1992a, Social justice, postmodernism and the city,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6, 588-601.

Harvey, D., 1992b, Postmodern morality plays, *Antipode*, 24, 300-326.

Jung, H., 1983, Marxism, ecology and technology, *Environment Ethics*, 5(3), 169-171.

Knox, P., 1975, *Social Well-Being: a Spatial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Kukathas, C. and Pettit, P., 1990, *Rawls: A Theory of Justice and Its Critics*, Polity Press, Oxford.

Kymlicka, W.(ed), 1992, *Justice in Political Philosophy*, Edward Elgar, Aldershot.

Le Grand, J., 1991, *Equity and Choice: An Essay in Economics and Applied Philosophy*, Harper Collins, London.

Lucas, J. R., 1980, *On Justice*, Clarendon Press, Oxford.

Miller, D., 1976, *Social Justice*, Clarendon Press, Oxford.

Miller, D., 1991, Recent theories of social justice,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 331-391.

Minnesota Geography Readings Group, 1992, Collective response: social justice, difference, and the city, *Environment and Planning D*, 10, 589-595.

Nozick, R., 1974, *Anarchy, State and Utopia*, Basic Books, New York.

Peffer, R. G., 1990, *Marxism, Morality, and Social Justi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Pinch, S., 1985, *Cities and Services: The Geography of Collective Consumption*, Routledge,

London

Pirie, G. H., 1983, On spatial justice, *Environment and Planning A*, 15, 465-473.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Rawls, J., 1985, Justice as fairness: political not metaphysical,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14, 223-252.

Reiman, J., 1990, *Justice and Modern Moral Philosophy*,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Sitovsky, T., 1964, *Papers on Welfare and Growth*,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Smith, D., 1974, Who gets what where, and how: a welfare focus for human geography, *Geography*, 59, 289-297.

Smith, D., 1977, *Human Geography: A Welfare Approach*, Edward Arnold, London.

Smith, D., 1992,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some reflections on social changes in Eastern Europe, *Geography Research Forum*, 12, 128-142.

Smith, D., 1994, *Geography and Social Justice*, Blackwell, Oxford.

Smith, D., 1995, The return of social justice and the possibility of universals, *Geography Research Forum*, 15, 1-13.

Solomon, R. C. and Murphy, M. C.(eds), 1990, *What is Justice?: Classical and Contemporary Readings*,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Sterba, J. P., 1986, Recent work on alternative conceptions of justice, *American Philosophical Quarterly*, 23, 1-22.

Wenz, P., 1988, *Environmental Justice*,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Albany.

Young, I., 1990,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접수 : 2003. 7. 10, 채택 : 2003. 9. 25)